

의안번호	2220587
의 퇴 인	박상혁의원
회 답 일	2026.10.12.
추 계 번호	26D4151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9조 (갈등관리계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공공정책의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계획(이하 “갈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제1항)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은 갈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제2항) 국무조정실장은 제출받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갈등관리계획을 종합하여 중앙갈등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조정을 거쳐 종합갈등관리계획을 확정 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종합갈등관리계획을 통보하여야 함(제4항)	의무규정
2	안 제10조 (중앙갈등관리협의회)	공공갈등 관리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갈등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둠(제1항)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제3항) 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과 공공갈등 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함(제4항)	의무규정
3	안 제11조 (갈등관리위원회)	공공갈등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에 대한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갈등관리위원회(이하 ‘갈등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적은 기관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갈등관리기관은 이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제1항) 갈등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제3항) 공공갈등관리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또는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의 교원은 제외한다)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함(제4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4	안 제12조 (공공갈등영향분석)	공공갈등관리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시행 또는 변경함에 있어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정책에 대한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음(제1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정책에 대하여는 갈등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여야 함(제2항) 공공갈등관리기관의 장이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고, 갈등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제3항) 공공갈등관리기관의 장이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영향평가를 실시하면서 제3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경우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봄(제4항)	재량규정
5	안 제13조 (공론화의 활용)	공공갈등관리기관의 장은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 일반시민 등의 참여 및 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론화를 활용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6	안 제14조 (대체적 갈등해결방법의 활용)	공공갈등관리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의 수립·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체적 갈등해결방법을 활용할 수 있음(제1항) 공공갈등관리기관의 장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안별로 이해관계인 등이 참여하는 갈등조정협의회(이하 ‘갈등조정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7	안 제15조 (갈등관리지원센터 설립·지정)	국무조정실장은 공공갈등관리기관의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필요한 지원 업무를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제1항) 국무조정실장은 지원센터로 지정한 기관에 대하여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8	안 제16조 (갈등관리지침서의 작성 및 활용)	국무조정실장은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갈등관리지침서(이하 '갈등관리지침서'라 한다)를 공공갈등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의무규정
9	안 제17조 (공공갈등 관리실태의 점검·보고 등)	국무조정실장은 중앙행정기관의 공공갈등 관리실태 등을 점검·평가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갈등 관리실태 등을 점검·평가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10	안 제18조 (전문인력의 양성)	공공갈등관리기관의 장은 공공갈등 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음	재량규정
11	안 제19조 (정보화시스템 구축)	공공갈등관리기관의 장은 공공갈등 관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갈등의 예방과 해결 사례 등 정보를 축적한 갈등관리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음. 이 경우 국무조정실장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함	재량규정
12	안 제20조(포상)	정부는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13	안 제21조(재정지원)	공공갈등관리기관의 장은 공공갈등 관리에 필요한 조사·연구·교육훈련과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공공갈등 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7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9조 (갈등관리계획)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10조 (중앙갈등관리협의회)	
3	안 제11조 (갈등관리위원회)	
4	안 제12조 (공공갈등영향분석)	
5	안 제13조 (공론화의 활용)	
6	안 제14조 (대체적 갈등해결방법의 활용)	
7	안 제15조 (갈등관리지원센터 설립·지정)	
8	안 제16조 (갈등관리지침서의 작성 및 활용)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5조(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에 따라 이미 실시하고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음
9	안 제17조 (공공갈등 관리실태의 점검·보고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10	안 제18조 (전문인력의 양성)	
11	안 제19조 (정보화시스템 구축)	
12	안 제20조(포상)	
13	안 제21조(재정지원)	

2. 상세 사유

가. 총괄

- 제정안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공공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위원회, 공공갈등영향분석, 공론화의 활용 등 공공갈등관리체도를 마련함
- 현재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근거로 중앙행정기관의 갈등관리실태 점검·평가, 갈등관리매뉴얼 작성, 갈등관리연구기관의 지정·운영 지원 등에 대한 예산이 이미 집행되고 있음
 - 2027년도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예산안 기준 ‘공공기관 갈등관리’ 사업에 4억 4,000만원, ‘숙의공론화기구 운영’ 사업에 17억원이 편성되어 있음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경우 현재 공공갈등관리체도의 운영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정안에 따라 공공갈등관리체도를 운영하게 되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공공갈등관리체도를 추가적으로 운영하게 될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를 구체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
 - 제정안에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갈등관리기관”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음¹⁾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광역 지방자치단체 17곳은 모두 갈등관리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상당수의 기초지자체도 공공갈등관리 규정의 큰 틀

1) 안 제2조(정의) 2. “공공갈등관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과 유사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였음

나. 조문별 상세 사유

□ 갈등관리계획(안 제9조)

- 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공공정책의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은 갈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현재 중앙행정기관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4조²⁾에 따라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조례를 통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 현재 공공갈등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종합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각 부서 및 산하기관의 전년도 갈등관리 성과를 취합하고 의견수렴 및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며, 필요 시 전문가 자문을 받고 있어 전문가 자문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기관마다 자문 여부 등이 다를 수 있고, 그 금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³⁾

□ 중앙갈등관리협의회(안 제10조)

- 제정안은 공공갈등 관리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갈등관리협의회를 두도록 함
- 현재 이와 유사하게 갈등관리에 대한 관계부처간의 협의 등을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갈등관리정책협의회를 두고 있음
- 다만, 제정안에서는 의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됨을 규정할 뿐 구체적인 수나, 민간위원의 수 등을 알 수 없어 추가적인 재정 소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나 회의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추가재정 소요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⁴⁾

2)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4조(중앙행정기관의 책무) ① 중앙행정기관은 사회 전반의 갈등예방 및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3) 2027년도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예산안에 따르면 갈등관리 전문가 자문료로 1회당 2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4) 2027년도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예산안에 따르면 갈등관리정책협의회 회의 횟수를 4회로 하여

□ 갈등관리위원회(안 제11조)

- 제정안은 공공갈등관리기관에 갈등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도 공공갈등관리위원회 설치 대상에 포함되어 위원회 운영비, 민간위원의 참석수당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각 기관별로 회의 횟수, 민간위원의 수 등이 다르고, 설치 대상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수를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 현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경우 현재 48개 중앙행정기관 중 법제처를 제외한 47개에 설치되어 있으며, 각 중앙행정기관의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음
 - －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례를 통해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 공공갈등영향분석(안 제12조)

- 제정안은 중앙행정기관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도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정책에 대하여는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의무화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공공갈등영향분석 횟수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 － 현재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0조⁵⁾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해서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갈등영향분석 실시 현황은 다음과 같음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5)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0조(갈등영향분석)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표 1] 갈등영향분석 실적: 2021~2025년

부처명 (장관급)	실적(건)					부처명 (차관급)	실적(건)				
	‘21	‘22	‘23	‘24	‘25		‘21	‘22	‘23	‘24	‘25
재경부	0	0	0	0	0	인사처	0	3	3	2	2
과기정통부	0	0	0	0	0	법제처	0	0	0	0	0
교육부	4	6	6	7	6	식약처	0	1	0	0	0
외교부	0	0	1	0	0	데이터처	0	1	0	0	0
통일부	1	1	1	0	1	지재처	0	4	2	0	3
법무부	0	0	0	0	1	국세청	0	0	0	0	0
국방부	0	3	1	1	1	관세청	0	1	0	0	0
행안부	0	0	0	0	0	조달청	1	1	2	2	2
보훈부	1	1	1	3	3	우주청	24.5월 설립				0
문체부	0	0	0	0	0	동포청	23.6월 설립			0	0
농식품부	0	1	3	0	0	병무청	0	0	1	5	6
산업부	0	0	0	0	0	방사청	0	0	0	0	0
복지부	5	11	9	7	7	경찰청	1	1	1	1	2
기후부	2	0	6	4	4	소방청	0	0	0	0	0
노동부	6	6	5	7	0	국가유산청	2	0	0	0	0
성평등부	0	2	1	0	1	농진청	1	0	0	0	0
국토부	2	2	1	0	0	산림청	0	0	0	0	0
해수부	2	3	1	1	1	질병청	0	0	0	0	0
중기부	3	0	0	0	0	기상청	1	1	0	0	0
기획처	26.1월 설립					행복청	2	2	2	2	2
방미통위	3	3	3	3	4	새만금청	0	0	0	0	0
공정위	0	0	0	0	0	해경청	0	1	0	0	0
국민권익위	3	3	3	3	3	원안위	0	0	0	0	0
금융위	0	0	3	0	0						
개인정보위	0	2	3	3	3						

□ 공론화의 활용(안 제13조) 및 대체적 갈등해결방법의 활용(안 제14조)

- 제정안은 공공갈등관리기관의 장이 공론화 또는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등 대체적 갈등해결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그 활용횟수를 예측하기 어렵고 대상 안건의 성격에 따라 회의 횟수, 위원회 구성 규모 등 편차가 커 그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

[표 2] 중앙부처 차원에서 설치·운영된 공론화위원회 현황

구분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	경인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목적	고준위방사성 폐기물 관련 사회적 합의 도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여부 공론화 진행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진행	아라뱃길 사업의 과거 정책의사결정 과정 분석 및 기능 개선안 마련	제1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공론화 통해 재검토
운영기간	‘13.10.~’15.6.	‘17.7.~’17.10.	‘18.4.~’18.8.	‘18.10. ~’21.2.	‘19.5.~’21.2.
위원회 구성	위원장 1인 포함 15인	위원장 1인 포함 9명	위원장 1인 포함 7명	위원장 1인 포함 15인	위원장 1인 포함 15인
활동결과	2만 7천여명의 의견 바탕으로 10개 권고사항 도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등 권고안 도출	대학입시제도 개편 권고안 도출	주요기능 축소, 문화관광 확대 등 권고사항 도출	사용후핵연료 정책 전반에 걸친 8개 정책 권고사항 도출
정책 반영 여부	제1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16.7월), 고준위방폐물 관리법 국회 제출(‘16.11월)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정(‘17.10월)	권고안 등 반영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 발표(‘18.8월)	관계기관과 이행 방안 논의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21.12월) 고준위특별법 추진 및 제정(‘25.3월)
예산 집행액	77.5억원	37.3억원	18.3억원	9.2억원	56.6억원

자료: 국무조정실

□ 갈등관리지원센터 설립·지정(안 제15조)

- 제정안은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필요한 지원 업무를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제정안은 갈등관리지원센터의 업무로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정책·법령·제도 문화 등의 조사·연구, 갈등관리지침서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지원, 공공갈등관리기관 소속 직원 대상 갈등관리 교육, 공공갈등영향분석의 시행 및 컨설팅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현재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4조⁶⁾에 따라 지정된 갈등관리연

6)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4조(갈등관리연구기관의 지정·운영) ①국무조정실장은 갈등관리와 관련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갈등관리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갈등관리 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정책·법령·제도·문화 등의 조사·연구
2. 갈등의 예방·해결 과정과 관련된 매뉴얼 작성·보급
3.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연구
5.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방법에 대한 조사·연구

구기관의 역할과 유사함

- 따라서 갈등관리지원센터로 현재 갈등관리연구기관을 지정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표 3] 최근 3년간 갈등관리연구기관 지정 운영 현황 및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2023	2024	2025
예산	230	210	210
연구기관	5개 기관 지정: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 한국행정연구원 (사)한국갈등해결센터 전북대 공공갈등과지역혁신연구소		

자료: 국무조정실

□ 공공갈등 관리실태의 점검·보고 등(안 제17조)

- 제정안은 국무조정실장은 중앙행정기관의 공공갈등 관리실태 등을 점검·평가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갈등 관리실태 등을 점검·평가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국무조정실장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6조⁷⁾에 따라 매년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갈등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음
 - － 현재 국무조정실의 ‘공공기관 갈등관리’사업의 내역사업인 ‘갈등관리 운영지원’에서는 부처별 갈등관리 제도 실태 점검 평가 등의 예산으로 2026년 2,900만원이 편성됨
-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방자치단체 공공갈등 관리실태 점검 등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제정안에 따라 추가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중 공공갈등 관리 실태의 점검·평가 대상기관을 현 시점에서 명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6. 그 밖에 갈등의 예방·해결에 필요한 사항

7)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6조(갈등관리실태의 점검·보고 등) ① 국무조정실장은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갈등관리의 실태 등을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 전문인력의 양성(안 제18조)

- 제정안은 공공갈등관리기관의 장이 공공갈등 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현재도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8조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갈등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자격제도의 도입 등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시책의 내용을 알 수 없어 추계가 곤란함

□ 정보화시스템 구축(안 제19조)

- 제정안은 공공갈등관리기관의 장이 공공갈등 관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갈등의 예방과 해결 사례 등 정보를 축적한 갈등관리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갈등관리정보화시스템을 운영할 공공갈등관리기관의 수가 확정적이지 않고 기관마다 갈등관리정보화시스템의 규모 등이 상이할 수 있어 추계가 곤란함

□ 포상(안 제20조)

- 제정안은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포상의 구체적 조건이나 포상금 규모 등을 알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를 예측하기 곤란함

□ 재정지원 등(안 제16조)

- 제정안은 공공갈등관리기관의 장이 공공갈등 관리에 필요한 조사·연구·교육훈련과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공공갈등 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8)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8조(갈등전문인력의 양성 등) 중앙행정기관은 갈등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자격제도의 도입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 다만,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규모 등을 예측할 수 없어 합리적인 추계가 어려움

－ 현재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9조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갈등관리에 필요한 조사·연구·교육훈련, 민간부문의 갈등관리 활동 등을 위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두고 있고, 국무조정실의 ‘공공기관 갈등관리’사업의 내역사업인 ‘갈등관리 연구’에서는 공공갈등 관리를 위한 제도분석 및 연구를 위하여 2027년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 따라서 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박은비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은비	02-6788-4831	ebpark@nabo.go.kr

9)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9조(수당지급 등) ②중앙행정기관은 갈등관리에 필요한 조사·연구·교육훈련과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갈등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